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66 발의연월일: 2025. 4. 3.

발 의 자:윤준병・민병덕・박지원

신영대 • 이원택 • 이성윤

조계원 • 허 영 • 박희승

김교흥 • 안도걸 • 김한규

김태년 • 박민규 • 김우영

김태선 · 허종식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 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되, 「수의사 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에 한하여 동물진료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이하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라 한다)는 해당 시설의 동물에 한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 허용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 · 수족관 내의 동물에게 급성 질병이

발병하거나 갑작스러운 부상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만 가능할 뿐 진료는 할 수 없어 사실상 응급상황에 따른 긴급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수의사법」에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상시고용된 시설 내의 동물에 한하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예 외적 진료를 허용하도록 개정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상 의약품 판매에 있어 기존 동물병원 개설자에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를 포함하려는 것 임(안 제47조의3제4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95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592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3제4항 중 "개설자에게" 를 "개설자등에게"로 한다.

법률 제20592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제2항 단서 중 "개설자에게"를 "개설자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설자에게"를 "개설자등에게"로, "동물병원의"를 "동물병원 또는 축산농장·동물원·수족관의"로 한다.

제85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개설자는"을 각각 "개설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동물병원 개설자"를 "동물병원 개설자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592호 약사법	법률 제20592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	제47조의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			
터의 지정·운영 등) ① ~ ③	터의 지정·운영 등)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0조제	4			
2항 단서에 따라 동물병원 <u>개</u>	<u>ग</u> ो			
<u>설자에게</u> 판매된 전문의약품의	설자등에게			
유통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하				
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				
터가 운영하는 전산망을 「수				
의사법」 제12조의3에 따른 수				
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하				
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592호 약사법	법률 제20592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약품 판매) ① (생 략)	제50조(의약품 판매) ① (현행과			
	같음)			
②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	②			
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				
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				

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약국개설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동물병원 <u>개설자에게</u> 전 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그 동물병원의 명칭, 연락처, 의약 품의 명칭, 수량, 판매일 등의 판매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저 특례) ① ~ ③ (생 략)

④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 병원 개설자는 제44조에도 불 구하고 동물 사육자에게 동물 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동물 을 진료할 목적으로 제50조제2 항 단서에 따라 약국개설자로 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
<u>개설자등에게</u>
③
<u>개설자등에게</u> -
-동물병원 또는 축산농장・동
물원·수족관의
<u>.</u>
④·⑤ (현행과 같음)
세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4
<u>개설자등은</u>

- 이 경우 동물병원 <u>개설자는</u> 농 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 래 현황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⑤ (생략)
- ⑥ 이 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약국개설자 또는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3. (생략)
- ⑦ ~ ⑫ (생 략)

<u>.</u>				
⑤ (현행과 같음)				
<u>⑥</u>				
<u>동물병원 개설자등</u>				
1. ~ 3. (현행과 같음)				
⑦ ~ 12 (현행과 같음)				

게 서 기 ㄷ o